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1가단287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피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모) B

변론 종결2024. 3. 27.

판결 선고202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680,198원 및 그 중 12,776,890원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3. 11. 17.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3.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연 9%는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할 때 연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행	E	2015. 6. 26.	2021. 6. 22.	20,000,000	100%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C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구상권의 행사 또는 그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28.부터 2018. 11. 20.까지 연 12%, 2018. 11. 21.부터 2021. 12. 31.까지 연 9%, 2022. 1. 1.부터 연 8%이다.

라.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0. 10. 27.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1. 5. 8. D은행에게 C을 대위하여 12,790,6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금 중 13,780원을 회수하였는바, 대위변제금 잔액은 12,776,890원이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 289,12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1. 5. 18.부터 2023. 11. 8.까지 발생한 손해금의 합계는 2,614,188원이다.

바. C은 2021. 4. 15.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다. 피고는 2022. 1. 25. 전주지방법원 2022느단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2. 15.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1) 원고에게 구상금 15,680,198원(= 대위변제금 잔액 12,776,890원 + 대지급금 289,120원 + 확정손해금 2,614,18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2,776,890원에 대하여 최종 확정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3.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1. 17.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미정

1) 한정승인심판 취지에 따른 것이다.